

#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8- 63 |
|----------|-------|

제출년월일 : 2018.11.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 제안이유

- 시민과의 협치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지역 사회의 시정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협치 추진 체계 구축 및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협치, 시민, 협치사업에 대한 용어 정의

### ○ 협치의 기본원칙(안 제3조)

-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이루어 짐.
- 협치 참여자는 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
- 협치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시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

### ○ 협치협의회의 설치(안 제7조)

- 시장은 시민과의 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함.
-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 협의회의 기능(안 제8조)

- 시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결정, 시행,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
-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시민 정책 제안 및 협치사업에 관한 사항.
- 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
- 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 ○ 협의회의 구성(안 제9조)

-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시장, 위촉직 회장),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함.
- 위촉직 위원은 시정과 협치 활동에 참여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는 사람 중 공개모집, 동행정복지센터와 사회단체 등의 추천, 시의회 추천, 시장의 추천으로 위촉함.

○ 위원의 임기(안 제10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

○ 의견 수렴 등(안 제13조)

- 협의회는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시민제안, 협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 자문, 토론회 등을 의뢰할 수 있음.
- 협의회는 시의 현안 중 별도의 시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시민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안 제15조)

- 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등이 포함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함.

○ 사업 지원(안 제19조)

- 협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협치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과 단체에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 협치백서 발간(안 제21조)

- 협치 활성화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안산시 협치백서를 매년 발간함.

제정 조례안 :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사전예고(결과) : 붙임 4

- 입법예고 : 2018. 10. 11. ~ 2018. 10. 31. (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있음” (의견 1건 반영)

기타 참고사항

- 방침결정문 : 붙임 5

< 불임 1 > 제정 조례안

##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시정에 대한 안산시민과 안산시의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치”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함께 시의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還流)하는 시정의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시민”이란 시의 관할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관할 구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관할 구역의 기관·법인 또는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협치사업”이란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기본계획과 실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협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협치 참여자는 협치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협치의 모든 과정은 시민과 시의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의 정책을 기획, 결정, 집행 및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시민은 협치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시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협치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 관계)** ① 협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협치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거나 다른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산시협치협의회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협치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안산시협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치 업무의 총괄 및 제도 개선 실행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결정, 시행, 평가 및 환류(還流)에 관한 사항
  2.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시민 정책 제안 및 협치사업에 관한 사항
  4. 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
  5. 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제1항 따라 심의·조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이를 시정에 반영·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의 공동회장 중 당연직 회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장과 부회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협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정과 협치 활동에 참여한 경험 또는 관심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가진 시민으로서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사람

3.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추천한 사람
  4.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5. 그 밖에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시장은 공개모집으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정하여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회장이 질병,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장은 필요한 경우 안전 등에 관련되는 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간사는 개최된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의견 수렴 등)** ① 협의회는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 시민제안, 협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 자문, 토론회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시의 현안 중 별도의 시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경우 시민기획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지원)** ①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조사, 연구, 자문, 토론회 등과 시민기획단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장 협치 활성화 등

**제15조(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시장은 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4년마다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치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2. 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협치 매뉴얼 작성 및 관리
5. 시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 교육
6. 그 밖에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협치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협치 협약)** ① 시장은 협치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자 간에 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제도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협의회의 권고 또는 공론화 절차를 통한 합의에 따라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의 협치 활성화 정책에 대한 협의회의 평가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 시장은 협치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 지원)** ① 시장은 협치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0조(교육 등)**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에 의뢰하고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연수, 워크숍, 토론회 등 시의 협치 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21조(협치백서 발간)** 시장은 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사항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안산시 협치백서를 발간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       |                | 미래전략관              |
|-------------|----------------|--------------------|
| 입<br>안<br>자 | 실·과장<br>직위·성명  | 미래전략관<br>김 민       |
|             | 담당·팀장<br>직위·성명 | 시민소통팀장<br>장 봉 순    |
|             | 담당자<br>성명·전화   | 정 경 수<br>(행정 3402) |

#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br>번호 | 제8-63호 |
|----------|--------|

제안년월일 : 2018. 12. 5.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 수정이유

- 협치협의회 구성인원이 과다하여 70명으로 줄이고 협의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 □ 주요골자

- 협의회의 존속기한 명시 (안 제7조제4항)
- 협치협의회의 구성인원을 70명으로 함.(안 제9조제1항)

##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100명” 을 “70명” 으로 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원안   | 수정안   |
|--|---|
|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③ (생략)<br><br>〈신설〉  |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③(원안과 같음)<br><br>④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br>31일로 한다. |
|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br>장 2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u>100명</u><br>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② ~⑥(생략) |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br>----- 70명 -<br>-----.<br>② ~⑥(원안과 같음)         |